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61

발의연월일: 2021. 3. 2.

발 의 자:이헌승·서병수·김도읍

조태용 · 최형두 · 하영제

박성민 · 김태흠 · 권영세

최춘식 • 이주환 • 김성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중 1곳(1,12 7개소 중 387개소 미가입)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하며,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.

이에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,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·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,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제2항, 제34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운전자격"을 "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"으로 한다.

제34조의3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전문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운전자격확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규 정에 따른다.
- ⑤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34조의2(자동차대여사업자의 제34조의2(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) ① (생 략) 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 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 차계약서상의 운전자(제34조제 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 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운전자 제34조 격을 확인하고, 해당 운전자가 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-----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 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여사 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·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③ • ④ (생 략) 제34조의3(운전자격확인시스템 제34조의3(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) ①・② (생 략) 구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・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
	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·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④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정보
	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
	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
	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규
	<u>정에 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
	•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에 필
	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	<u>다.</u>